



2019. 1. 25.

KOLAS 공인기관 평가수당

*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4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

■ 2019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

(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, 2018. 12. 07.)

- 평가사 1일 수당 : 특급기술자 기타 (**276,817원**)
- 공제사항 : 소득세(**소득금액의 8%**), 주민세(소득세의 10%)

(단위 : 원)

평가 일수	평가수당 (문서심사 동일)	소득세 (소득금액의 8%)	주민세 (소득세의 10%)	공제액	평가수당 (공제후/원단위 절삭)
1일	276,817	22,145	2,215	24,360	252,450
2일	553,634	44,291	4,429	48,720	504,910
3일	830,451	66,436	6,644	73,080	757,370

※ 공제범위 : 평가수당 + 평가여비(실비정산내용 포함)

KOLAS 공인기관 현장평가여비

*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인사혁신처예규 제62호(2018. 11. 01.)

■ 근무지내·외 출장

구 분	거 리	여비지급기준	비고
근무지내	▶ 왕복 12 km 미만	2만원(정액)	
	▶ 왕복 12 km를 넘더라도 동일시·군		
	▶ 다른 시·군이고 왕복 12 km이상이라도 교통여건(지하철, 버스 등)을 고려		
근무지외	▶ 왕복 12 km 이상	운임, 일비, 식비, 숙박비	

■ 여비기준

구분	운 임	일비	식비	숙박비
제2호	실비정산	20,000원	20,000원	실비정산 <상한액> ▶ 서울특별시 70,000원 ▶ 광역시 60,000원 ▶ 그 외 50,000원

*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숙박비 상한액은 그 외로 50,000원 지급

◦ 철도운임(일반실 기준 실비), 고속(시외)버스운임(실비), 항공운임(실비)

- 실비 정산 :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

◦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

- 연료비 : 여행거리 편도(km) × 유가 ÷ 연비

· 여행거리 기준 : 최소거리 기준

· 유가 : 출장 당일 기준 유가(오픈넷 '전국 평균유가' 참조)



· 연비

구 분	휘발유 차량	경유 차량	LPG 차량
연비(km/l)	13.30	14.30	9.77

- 다만,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,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,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
- 통행료 및 주차료 :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
-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하고 숙박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(영수증 등)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 기준상 정해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만 지급한다.(증거서류 첨부) 다만,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30%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< 추가지급 예시 >

-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,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
-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
-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

※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는 숙박비/운임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정산 가능

■ 여비 산정 예시

- **사례 1(근무지외)** : 회사가 서울(서울시청)인 평가사가 대구(대구시청)로 3일간 평가를 나간 경우
 - 여비 산정 내역
 - **일비** : $20,000 \times 3 = 60,000$ 원
 - * 서울시청-서울역 교통비 및 대구역-대구시청 교통비는 일비로 정산
 - **식비** : $20,000 \times 3 = 60,000$ 원
 - **숙박비** : (실비정산시) $(55,000(\text{영수증 금액}) \times 2) = 110,000$ 원
 (상한액정산시) $(60,000 \times 2) = 120,000$ 원
 - * 숙박비 상한액 초과시에도 숙박 증빙 영수증 제출



- **여비** : (KTX 이용시) 서울-대구 KTX : 43,800원 x 2 = 87,600원
 (자차 이용시) 276.55 km x 1,548(휘발유) ÷ 13.30(연비) = 32,180원(연료비)
 + 12,500원(통행료) = 44,680원 x 2 = 89,360원
 (N포털 기준 최단거리 : 276.55 km, D포털 기준 : 278.9 km)

<여비 산정 내역>

구분	D+0	D+1	D+2
일비	20,000	20,000	20,000
식비	20,000	20,000	20,000
숙박비(상한액)	60,000	60,000	-
숙박비(실비)	55,000	55,000	-
여비(KTX)	서울-대구 KTX : 43,800원x2=87,600원		
여비(자차)	서울-대구, 대구-서울 연료비(32,180원)+통행료(12,500원)=44,680원x2=89,360원		

- 출장비 총액

<숙박비 상한, KTX 이용시>
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	여비 (KTX 이용)	총액
금액	60,000	60,000	120,000	87,600	327,600

<숙박비 실비, 자차 이용시>
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 (실비적용시)	여비 (자차 이용)	총액
금액	60,000	60,000	110,000	89,360	319,360

- **사례 2(근무지내)** : 회사가 안양(안양시청)인 평가사가 서울(구로시청)로 3일간 평가를 나간 경우(왕복 12km 이상, 안양시청-구로시청 최단거리 : 15.02 km)
- 여비 산정 내역 : 다른 시·군이고 왕복 12km 이상이긴 하나 교통여건(지하철, 버스 등)을 고려하여 근무지내로 판단
- **일비** : 20,000 x 3 = 60,000원



<여비 산정 내역>

구분	D-1	D+0	D+1	D+2
일비	-	20,000	20,000	20,000

- 출장비 총액
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	여비	총액
금액	60,000	-	-	-	60,000